

[별표 13의2] <신설 2010.6.30>

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(제34조의2 관련)

1. 검사장비

장 비 명	기 준
가. KSCI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	1조 이상
나.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	1조 이상
다. 회전속도계	1대 이상
라.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1km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시험로	1개 이상
마. 기상관측장비	1척 이상

2. 기술인력

자 격	기 준
가. 일반기계기사 1급, 자동차검사기사 1급, 건설기계정비기사 1급,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및 대기환경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	1인 이상
나.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,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이상, 전자기기기능사 2급 이상 및 환경기능사의 기술자격소지자	2인 이상

비고: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.